

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

- 총 106개 국가지역 -

2020.3.9.(월) 09:00 외교부(재외국민안전과)

※ 국가지역별 가나다순

① 입국금지 조치 : 44개

※ 명시적 입국 금지,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

가.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38개 국가지역

구 분	조 치 사 항
아시아·태평양	나우루 ▶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3.)
	마셜제도 ▶ 2019.12.31. 이후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탈리아, 일본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
	マイ크로 네시아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몽골 ▶ 2.27.-3.11.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바누아투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2019.12.31. 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하기(2.28.) ※ △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(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), △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, △왕복 항공권 필요
	부탄 ▶ 3.6.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
	사모아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(2.19.)
	사모아 (미국령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(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, 이탈리아, 이란, 쿠웨이트, 대만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바레인 등) 및 미국 주(워싱턴, 오레곤, 캘리포니아, 애리조나, 텍사스, 일리노이, 위스콘신, 뉴욕, 뉴햄프셔, 매사추세츠, 노스캐롤라이나, 조지아, 플로리다, 로드아일랜드 등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/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(3.6.)
	솔로몬제도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홍콩, 태국, 이란, 대만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
구 분	조 치 사 항
	<p>싱가포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4.(수) 23: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(3.3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싱가포르 시민,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(지정병원) 격리(3.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, 즉시 추방,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※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(동반자 포함)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
	<p>쿡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(2.27.)
	<p>키리바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(2.11.)
	<p>투발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
	<p>피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7.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
	<p>호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5. (현지시간 21:00)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(경유 포함)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
	<p>홍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·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(2.25.) ※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(2.8)
	<p>엘살바도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
	<p>자메이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영주권 보유자,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, 조건부(검사 및 격리) 입국허용
	<p>트리니다드 토바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.)
	<p>카자흐스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6.부터 한시적으로 한국, 중국, 이란 국적자의 입국경유 금지(사증 발급도 중단)(3.6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△외국 정부 대표단, △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, △항공사 승무원, △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※ 3.8.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(사증 발급도 중단)(3.6.)
	<p>키르기즈스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
	<p>터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3.1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
	<p>중동</p> <p>레바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8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(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·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)는 입국 가능

구 분	조 치 사 항	
	바레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1.) ※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(검사, 격리 등) 입국 허용
	사우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아제르바이잔을 방문경유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(3.8.) ※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(2.27.) ※ UAE쿠웨이트비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(3.7.) ※ 한국, 이탈리아, 이집트,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(3.8.)
	오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8.)
	요르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3.) ※ 중국(2.2), 이탈리아(2.24)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
이라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, 프랑스,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(3.8.)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쿠르드지방정부)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, 이란, 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쿠웨이트,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 ※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/ 2020.1.10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
	이스라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4.) ※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(3.5.)
	카타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.) ※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조치
	쿠웨이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(환승 포함)금지(2.25.) ※ 14일이 지난 경우, 입국비자(3개월 유효)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
	팔레스타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마카오, 홍콩, 이라크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아프리카	마다가스카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대만, 마카오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(2.28.) ※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(3.3.)
	모리셔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 3개주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4.) ※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,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(3.3.)
	세이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홍콩, 마카오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5.)

구 분	조 치 사 항	
	앙골라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나이지리아, 이집트,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9.)
	적도기니	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
	코모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7.)

나.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: 6개 국가지역

구 분	조 치 사 항	
아시아· 태평양	말레이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·경유금지 ※ 사라왁주(2.29), 사바주(3.1)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※ 말레이시아 국민,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(2.28) ※ 한국, 일본,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(2.28) ※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
	몰디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, 경북, 경남, 부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2.) ※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(2.3), 이란(2.26.), 이탈리아(3.8.)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
	미얀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7.부터 대구·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6.) -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※ 대구·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
	인도네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8. (현지시간 00:00)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※ 한국발 입국자(국적불문)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(입국시 소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문 건강확인서는 △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, △열,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, 검사일과 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※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인니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인니 입국일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서 소지 필요(3.8.) - 영문 건강확인서는 한국 내 건강확인서 발급 요건과 마찬가지이며 제3국 경유체류시 해당 국가 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필요 ※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니로 들어오는 경우 건강확인서 불요
	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입국금지)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·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기 지역에 더해 3.7.부터 경북 일부지역(경산시, 안동시, 영천시, 칠곡군, 의성군, 성주군, 군위군)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3.5.) ▶ (시증 제한) 3.9.부터 △단수복수 시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에 대한 사용면제조치 정지(3.5.) ▶ (검역 강화) 3.9.부터 한국,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

구 분	조 치 사 항
	<p>지정장소(주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)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(3.5.)</p> <p>▶ (항공, 선박) 3.9.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(3.5)</p>
필리핀	<p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경북), 중국, 홍콩,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(2.26.)</p>

② 격리 조치 : 15개 국가지역(시설 격리)

가. 중국 지역

※ 시설 격리외에 자가격리도 포함(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 있음)

구 분	조 치 사 항
중국 (지역별)	<p>▶ 칭다오 류팅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(총 7열)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(3.6)</p> <p>▶ 웨이하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,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(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)(3.6.)</p> <p>▶ 옌타이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-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,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(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)(3.1)</p>
	<p>▶ 허난성 진입시,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(3.5)</p>
	<p>▶ 랴오닝성</p> <p>▶ 다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(2.25)</p> <p>▶ 선양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△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/자율격리*, △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 (2.26)</p> <p>*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,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</p>
	<p>▶ 지린성</p> <p>▶ 창춘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</p> <p>▶ 엔지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4)</p>
	<p>▶ 헤이룽장성</p> <p>▶ 헤이룽장성(하얼빈공항, 무단장공항 등) 진입시, 14일간 지정시설 격리(3.5)</p>
	<p>▶ 광둥성</p> <p>▶ 선전바오안공항/광저우바이원공항 (및 광동성내 항만), 한국발 내외국민 △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, △이상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(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)(3.6)</p>
	<p>▶ 푸젠성</p> <p>▶ 샤먼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)(3.4)</p> <p>▶ 푸저우시/취안저우시 진입시,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(3.4)</p>
	<p>▶ 후난성</p> <p>▶ 후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△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), △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,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(3.4)</p>
	<p>▶ 하이난성</p> <p>▶ 하이커우메이란공항/싼야펑황공항 (및 하이난성내 항만), 최근 14일내 한국</p>

		<p>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△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, △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(3.3) ※ 현재 한-하이난 직항편 없음.</p>
광시좡족 자치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난닝시 진입시,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사(발열, 기침 등)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(3.5) ▶ 구이린시 진입시, 최근 14일내 한국,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 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(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)(3.5) <p>※ 현재 한-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.</p>
상하이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푸동/홍차오공항, 최근 14일 내 대구·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, 최근 14일 내 대구·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) (3.3)
장쑤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난징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,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(2.29) ▶ 옌청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),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(2.26)
저장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항저우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,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(2.29)
톈진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톈진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,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-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*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
쓰촨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청두공항,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(3.1)
충칭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충칭공항,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(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), 양성판정자(확진자)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(3.1)
원난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원난성 진입시, 최근 14일 이내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(3.3) <p>※ 현재 한-원난성 직항편 없음.</p>
산시성 (陝西省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시안 션양공항,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(3.3)
베이징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도공항,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(발열자 및 대구·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)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(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,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),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

나. 기타 국가지역

구 분	조 치 사 항	
아시아·태평양	마카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 (2.26.) ※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,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
	베트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※ 한국인 대상 15일 무시증 입국 임시 중단(2.29.)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에서 출발, 또는 경유(국적불문)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자(발열, 기침, 호흡곤란)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(지정시설)(3.1.) /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(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,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(3.1.) ※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, 건강검진, 격리(3.1.)
	스리랑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9. 정오부터(현지시간)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3.8.)
미주	세인트류시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일본, 이탈리아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(2.26.)
	세인트벤센트 그레나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홍콩, 마카오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2.28.)
유럽	루마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(대구청도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청도 이외)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3.2.)
	벨라루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이탈리아, 일본, 싱가포르,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(2.25.) ※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2.25)
	우즈베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0.3.1. 이후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격리(지정시설), △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 (3.4.)
	타지키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(2.25.)
	투르크 메니스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(2.28.)
중동	모리타니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3.3.)
아프리카	가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시설)(2.29.)
	라이베리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(지정시설)(3.2.)
	부룬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, 프랑스, 스페인, 독일 방문 후 입국하거나,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지정호텔)(3.5.)

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: 47개 국가지역

* 도착비자 발급 중단, 자가격리(권고 포함), 도착 시 발열검사·검역 신고서 징구 등

구 분	조 치 사 항
아시아·태평양	<p>네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10.부터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(3.3.) ※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
	<p>뉴질랜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(3.3.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)
	<p>대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대만인 포함)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5.)
	<p>라오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(2.27.)
	<p>방글라데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(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(영문)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
	<p>브루나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 본토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(3.5.) ※ 관광,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
	<p>인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3.4.부터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,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(3.5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,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3.10.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‘음성’ 증명서류 제출 필요 ▶ 3.3. 이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(3.4.), △한국·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(2.28.) ▶ 2.1. 이후 한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·전자비자 효력 중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(중국) △ 1.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 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, △ 2.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, △ 1.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(2.3~)
	<p>태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싱가포르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/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콧물 등)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, △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, △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(2.23.) ※ 자가격리 비협조 시 관련 법적 조치
	<p>폴리네시아(프랑스령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0.1.1. 이후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, △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/의료소견서 제출 (5일내)(2.27.)
미주	<p>그레나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(3.7.)
	<p>멕시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, △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, 정밀검사 실시(48시간 이내)후 감염여부 확인(2.29.)
	<p>바베이도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△경증증상 시 자가격리, △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
	<p>베네수엘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, △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, △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(2.27.)

구 분	조 치 사 항
	<p>에콰도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, △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, 중증자는 병원치료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(3.5.)
	<p>온두라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대만, 일본,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, △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(2.20.)
	<p>코스타리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,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(2.29.)
	<p>콜롬비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태국, 아랍에미리트, 싱가포르, 미국, 에콰도르, 스페인,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(2.24.) ※ 모든 입국자(내외국민)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(3.5.)
	<p>파나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일부 지역)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건강상태 문진, △검역설문지 작성, △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(3.4.) ※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, 확진시 병원 이송
	<p>파라과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태국, 싱가포르, 홍콩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(3.6.)
유럽	<p>덴마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(대구경북), 이란, 중국(대만, 홍콩, 마카오 제외)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3.2.)
	<p>러시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모스크바 모든 공항) 한국발, 중국발, 이란발 항공기 텁승 내외국민 대상 △진단 검사 실시,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 ※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텁승 내외국민 대상 △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, △14일간 자가격리(3.3.) ※ (모스크바 시정부)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(3.4.) ▶ (사할린주) 한국, 일본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, △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(21일), △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▶ (연해주) 2.27.-4.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, 중국,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 역으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(2.27.) ▶ (이르쿠츠크)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△발열검사, △설문지 작성, △검체 채취, △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(3.4.)
	<p>몰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보건 당국에 신고, △14일간 자가격리 권고, △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(3.4.)
	<p>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검역설문지 작성/제출 및 발열체크 등, △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(2.24.) ※ 내국민 및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(3.4.)
	<p>북마케도니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(북부)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(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)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(2.27.)

구 분	조 치 사 항	
Europe	불가리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4.)
	사이프러스	<p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(후베이성 이외 지역)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(북부), 싱가포르,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△설문지 작성, △발열체크 실시, △14일 간 자가 격리(주변인 접촉 및 이동 제한, 위생수칙 준수, 증상 관찰/보고) 권고(3.6.)</p> <p>▶ 그리스, 프랑스,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(중부, 남부)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자가 관리(이동 제한 없음) 권고(3.6.)</p> <p>※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의학 관찰을 위한 격리(3.6.)</p>
	세르비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, 이란,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(발열 등) 시 문진 실시, △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, △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(자가/격리시설), △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(2.27.)
	아이슬란드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, △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(2.26.)
	아제르바이잔	▶ 모든 입국자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(지정 시설)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(2.28.)
	알바니아	▶ 한국, 중국,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
	영국	▶ 2020.2.19. 이후 한국(대구·청도·경산), 중국(후베이성), 이탈리아(북부)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3.5.) /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(대구·청도 이외), 중국, 일본,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, 보건의료서비스(NHS)에 통보의무 부과(2.6.)
	오스트리아	▶ 3.9부터 한국, 중국(일부지역),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(경유 후 입국 포함) 외국인(EU국적자 제외)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수(3.6.)
	조지아	<p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일본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(3.6.)</p> <p>※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(시설 또는 자가)</p> <p>※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(2.28)</p>
	크로아티아	<p>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탈리아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, △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, △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(2.24.)</p> <p>※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(2.29.)</p>
중동	모로코	▶ 한국, 중국,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, △발열검사 등 실시,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, 의무 샘플 검사 실시(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)(2.28.)
	튀니지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(3.8.)
아프리카	나이지리아	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(발열, 기침 등)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	말라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(지정시설),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8.)

구 분	조 치 사 항
모잠비크	▶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, △유증상 시 격리(지정시설)(3.3.)
민주콩고	▶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, △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 (3.2.)
에티오피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14일간 자가격리, △전화 모니터링, △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(2.18.) ▶ 한국, 중국, 이탈리아, 이란,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△발열검사, △건강신고서(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) 추가 작성 요구(3.2.)
우간다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잠비아	▶ 한국,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6.)
짐바브웨	▶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△입국시 검사, △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
케냐	▶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(2.27.)
부르키나파소	▶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(3.5.)
콩고공화국	▶ 한국, 프랑스, 이란, 이탈리아,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△발열검사 실시, △유증상 시 격리(지정시설)(3.6.)

끝.